

# 인터랙션사이언스연구소 규정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(명칭과 위치)** 본 연구소는 성균관대학교 부설 인터랙션사이언스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라 하며 성균관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안에 둔다.

**제2조(목적)** 연구소는 인간과 기술의 인터랙션에 관한 세계적 수준의 이론 및 기술 연구(World Class Research in Human Technology Interaction), 정보통신 분야 차세대 성장동력 제품, 서비스의 개발(Development of Blockbuster IT Products and Services), 미래 학문을 선도할 융합형 핵심 연구 인력 양성 및 해외 인재 유치(from Brain Drain to Brain Gain) 등을 최종 목표로 한다. 이는 국가 신성장동력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유지하는 동시에 나아가 국제적 기술 경쟁에 적극 대처하여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.

**제3조(사업)**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인간과 기술의 상호작용에 관한 공동 연구 추진
2. 인터랙션 사이언스 연구에서 정한 4가지 분야의 핵심 요소에 관한 연구 및 제품 개발에 대한 산학연 협동 연구 활성화
3. 산업체 인력 재교육을 통한 고급 인력의 양성
4. 휴먼-컴퓨터 인터랙션의 표준화 사업 자문 및 참여
5.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한 실용적 기술 개발과 기술의 상용화
6. 저명인사 초청 학술 세미나 개최 및 최신기술 교류
7.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## 제 2 장 조 직

**제4조(기구)** 연구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.

1. 연구소장
2. 운영위원회
3. 기획위원회
4. 평가위원회
5. 국제협력위원회
6. 연구부
7. 교육사업부
8. 연구지원부
9. 대외협력부

**제5조(연구소장)** ① 연구소장(이하 “소장”이라 한다)은 소프트웨어대학장(이하 “학장”이라 한다)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제청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.

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한다.

③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**제6조(사업부)** 각 사업부는 연구소 참여교수, 연구소 전임연구원 및 참여연구원으로 구성한다.

1. 연구부는 주관과제 및 협동과제의 실질적인 수행을 맡는다.

2. 교육사업부는 인력지원실 및 교육관리실로 나누고, 각각 전문인력수급과 산업체교육 등을 담당한다.
3. 연구지원부는 연구소의 행정업무 및 공공기관관리를 담당한다.
4. 대외협력부는 국제협력위원회의 세부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그 이외에 산업체와의 컨소시엄 업무, 및 협력업체 기술지원을 담당한다.

### 제 3 장 연구원

**제7조(연구원)** ① 연구기관에 두는 연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연구위원 :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촉된 자로 한다.
  2. 상임연구원 : 연구목적수행을 위하여 상근하는 자로서 연구경력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.
    - 가. 수석연구원 :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부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
    - 나. 책임연구원 :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조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
    - 다. 선임연구원 :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
    - 라. 연구원 : 석사학위이상 소지자
  3. 객원연구원 : 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인사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된 자로 한다.
  4. 연구원보 : 연구수행을 보조하는 자로서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한다.
- ② 연구소에는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으며, 조교는 본교 조교임용규정에 따라 임용한다.
- ③ 제1항제2호와 제4호의 상임연구원과 연구원보는 소장이 추천하고 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- ④ 제1항제1호와 제3호의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원은 소장이 위촉한다.
- ⑤ 상임연구원, 객원연구원 및 연구원보의 임용(위촉)기간은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### 제 4 장 운영위원회

**제8조(설치 및 구성)** ① 연구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-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.
- ③ 운영위원은 연구소의 연구위원 가운데서 소장이 위촉한다.
-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**제9조(심의사항)**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연구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과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
2. 연구소 규정 및 세칙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
3.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4. 연구기금의 조성, 배정, 관리에 관한 사항
5. 연구소의 인사에 관한 사항
6.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**제10조(회의)**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
-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### 제 5 장 기획위원회

- 제11조(기획위원회)** ① 연구소의 활동방향에 관한 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기획위원회를 둔다.  
 ② 기획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.  
 ③ 기획위원은 소장이 임명하고, 관련기관, 학계전문가, 3개 세부과제 책임자 등으로 구성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 
 ④ 기획위원은 운영위원을 겸할 수 있다.

## 제 6 장 평가위원회

- 제12조(평가위원회)** ① 연구소에는 연구소의 활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둔다.  
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교수 및 대학 관계자 등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소장이 겸직함을 원칙으로 한다.  
 ③ 평가위원회는 매 사업 년도의 연구소활동 전반을 평가하여 발전을 도모한다.

## 제 7 장 국제협력위원회

- 제13조(국제협력위원회)** ① 연구소에는 연구개발의 국제화 산업기술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제협력위원회를 두며,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평가, 자문, 협력한다.  
 1. 연차별 연구소 사업결과 평가(국제수준대비 평가)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자문을 받는다.  
 2. 국가별 저명학자들을 중심으로 국가간 국제협력사업을 개발하여 연구개발의 국제화 및 산업기술 국제 경쟁력 강화를 활성화한다.  
 ② 국제협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저명한 관련분야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.

## 제 8 장 재 정

- 제14조(재정)** ①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용역수입금, 기부금 및 기타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.  
 ② 연구소의 현금출납업무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무처 재무팀에서 관리한다.  
 ③ 연구소는 연구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연구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  
**제15조(회계연도)**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.

## 제 9 장 사업보고 및 감사

- 제16조(사업계획 및 보고)** ① 소장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 
 ② 소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, 결산잉여금처리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 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 
**제17조(감사)** 연구소는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.

## 제 10 장 해 산

- 제18조(해산)** 연구소의 해산은 「부설연구기관설치및운영규정」 제5조제2항 및 제18조에 따른다.

## 제 11 장 보 칙

제19조(세부사항)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